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70
----------	-----

2021. 7. 20.(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1년 6월 30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7월 2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7월 9일

-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 · 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연준 환경산림국장)

가. 제안이유

-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 대한 근거 법령인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법령 및 조항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령 폐지 및 제정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안 제3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3. 검토보고 요지 (김홍식 수석전문위원)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4월 2일 폐지되고, 2020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 대한 근거 법령과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4호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함.
-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차량에 근거 법령의 폐지에 따라 신설된 법령 및 조항으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70
----------	-----

제출연월일 : 2021년 6월 30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 대한 근거 법령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법령 및 조항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 폐지 및 제정에 따른 변동사항 변경(안 제3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0조

3. 의안전문 : 불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임

5. 관계법령 발췌 : 불 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운행 제한 대상차량) ① 운행 제한 대상차량은 「 <u>수도권 대기환 경개선에 관한 특별법</u> 」제29조에 따 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제3조(운행 제한 대상차량) ----- ----- <u>「대기관리권역의 대 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0 조</u> ----- ----- ----- ----- ----- ----.

관계 법령 발췌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2.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 등급

□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운행 제한 대상차량) ① 운행 제한 대상차량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자동차
2.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